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4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 자료집



군산신흥초등학교

54136 |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29

<http://www.kshin.or.kr>

【 차례 】

- ◆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1
- ◆ 평가 결과 처리 안내 8
- ◆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10
- ◆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12
- ◆ 출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14
- ◆ 교육활동 보호 안내 15
- ◆ 학교폭력 예방교육 17
-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20
- ◆ 아동 인권 존중 교육 22
- ◆ 도박 예방교육 24
-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5
- ◆ 신형 교육복지 운영 계획 30
-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32
- ◆ 양성평등 교육 34
- ◆ 성폭력 예방교육 35
- ◆ 약물오남용(흡연) 예방교육 38
-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40
-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42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43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1 2024 학교교육과정 설명

가. 학교현황

1) 연혁

연월일	연혁	연월일	연혁
1995.3.1.	군산신흥초등학교 개교	2006.9.19.	도지정 ICT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1.11.2.	도지정 독서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2012.3.18.	군산신흥초 병설유치원 개원
2018.12.31.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기관 표창	2023.03.01.	제14대 손영신 교장선생님 부임
2024.01.04.	제 28회 졸업식 (90명)	2024.03.01.	20학급 편성(395명, 특수 1학급 포함)

2) 학생현황 (2024.3.4. 기준)

학년	1	2	3	4	5	6	사랑반	계	
학급수	3	3	3	3	3	4	1	20(1)	
학생수	남	22	32	41	31	38	37	6	201(6)
	여	25	17	27	42	34	49	0	194(0)
	계	47	49	68	73	72	86	6	3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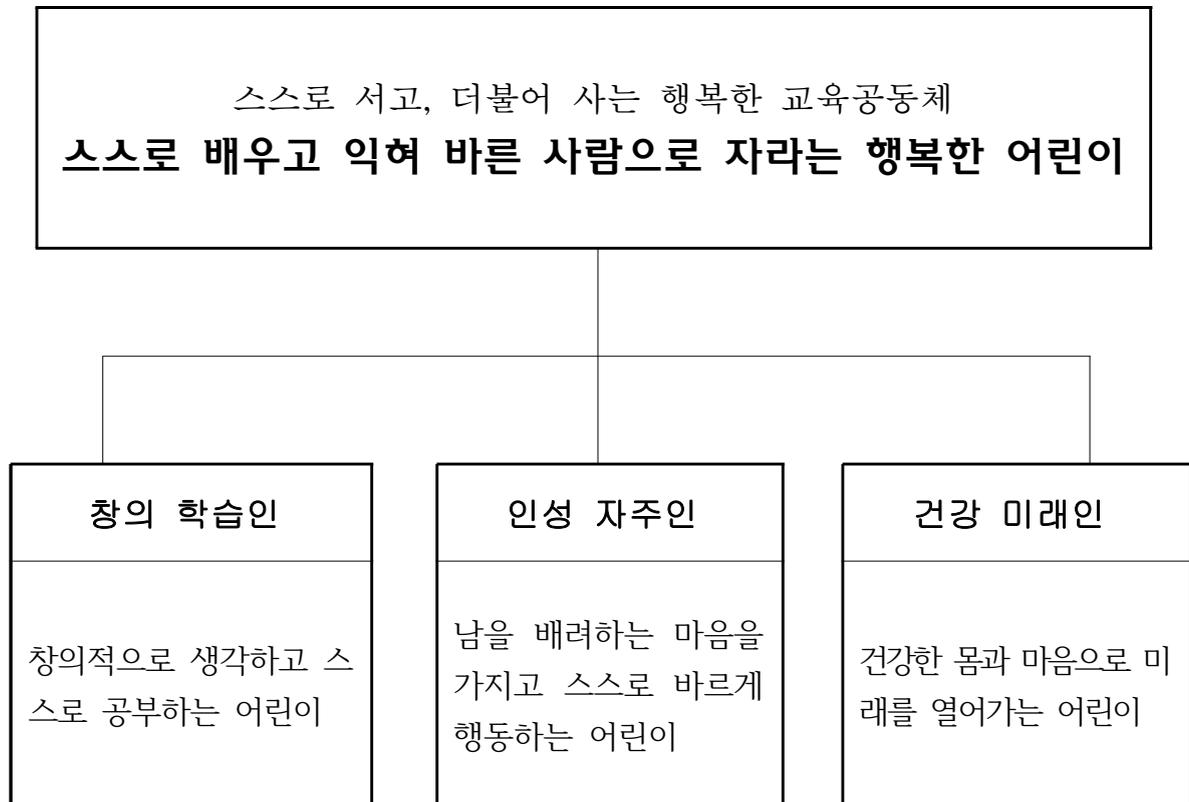
3)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전담)	교사(전담)	특수교사(보직겸합)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강사	유치원	소계	행정실장	행정직	교육공무직	소계	
남	·	1	2	5(1)	·	·	·	1	·	·	·	9	·	1	3	4	13
여	1	·	3(1)	12(1)	1	1	1	·	1	3	2	25	1	1	11	13	38
계	1	1	5(1)	17(2)	1	1	1	1	1	3	2	34	1	2	14	17	51

4) 시설 현황

구분	일반교실	관리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돌봄실	상담실	복지실	강당	급식실	조리실	화장실	창고	
			과학실	컴퓨터실	영어실	꿈마루실	음악실	조리실습실	방과후교실	보건실	도서실	자료실	방송실	학년연구실									
수	22	3	1	2	1	1	2	1	7	1	1	1	1	6	2	1	1	1	1	1	1	14	2

2 군산 신형초 교육의 지향점



교육과정에 반영할 사항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 공동체 운영	스스로 서고 함께 나누는 학교 자치와 인성교육 강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 기초 기본 학력 신장 ▪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교육 활동 전개 ▪ AI 디지털 수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 민주 시민 교육 ▪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체험활동 ▪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및 예술교육

3 교육 목표 및 방침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교육중점	구현내용	대상	목표량	시기	담당
1.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운영	가. 철학이 있는 교사 교육과정 운영 - 특색 있는 학년·학급 교육과정 운영	1-6	수시	연중	연구
	나.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전교사	월4회	매주	연수
	다. 교사 연수비 지원	전교사	연1회	연중	연수
	라. 수업나눔과 공유 -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실시 - 동료 대상 수업 나눔 실시	전교사	연1회 연1회 연1회	1학기 2학기	연수 연수 연수
2. 기초기본학력 신장	가. 학습 더딤 학생 책임지도 - 담임교사 및 외부 강사 활용(기초학력 협력교사) 개별 맞춤 교육	1-6	수시	연중	평가, 담임
	나. 교·수·평 일체화	1-6	수시	연중	평가
	다.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강화 - 영역별 평가 계획 수립 운영	1-6	수시	연중	평가
	라. 평가 결과 통지 방법 다양화	1-6	수시	연중	평가
	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3, 5, 6	연1회	3월	담임
	바. 학기말 총괄평가 실시	4-6	연2회	6, 1월	담임
3. 다양한 독서 및 인문교육 활동 전개	가. 3-6학년 온작품 읽기 - 학기당 1회씩(8차시 이상) 실시	3-6	연2회	1,2학기	담임
	나. 사서 교사와 함께 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 - 전학년 10차시 운영	1-6	수시	연중	사서
	다. 1-2학년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신장	1-2	수시	연중	담임
4. AI 디지털 수업 활성화	가. 에듀테크 기반 구축 - AI 정보중심 중점학교 운영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연수	1-6	수시	연중	정보 연수
	나. 외국어 교육 강화 - 영어전담,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강사 배치 - AI 팽톡 활용 영어 능력 신장	3-6	수시	연중	영어 전담
	다. 과학교육 내실화 - 디지털 교과서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수업 - 웨일북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3-6	수시	연중	담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교육중점	구현내용	대상	목표량	시기	담당
1.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가. 학교생활규정 생활화 지도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상담활동 강화(Wee센터와 연계) -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직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 연계 인성교육	1-6 1-6	수시 수시	연중 연중	인성 인정 담임
2. 민주시민교육	가. 학생 자치의 활성화 - 학급회 및 전교어린이회 운영 - 학생회실 설치 운영 - 학교 방송부 운영 나. 생활 속 봉사활동 - 학교행사 후 환경정화 활동 -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다.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 라.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교육 - 기후변화교육 실시 - 자원절약 및 분리수거 생활화	4-6 1-6 1-6 1-6	수시 수시 수시 수시 1회 이상 수시	연중 연중 4, 11월 5월 연중 4월 연중	자치,담임 자치,담임 자치 방송 담임 담임 환경 담임
3.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체험활동	가. 교육과정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나. 마을 탐구 교육 - 마을탐구 교사 공동체 활동과 연계 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 2,5학년 119안전체험관 활용 교육 - 3,4학년 수상안전교육 라. 계기교육 강화 - 독도의 날 계기 교육 실시 - 통일 교육 실시	1-6 1-2 1-6 2, 5 3, 4 1-6	2회 수시 1-6 1회 1회 수시 1회 1회	4,10월 연중 1-6 11월 7월 연중 10월 6월	체험,담임 담임 안전,담임 안전,담임 계기,담임
4.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가. 지역사회와 협조체제 구축 - 학교 시설 개방 나.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회 조직 운영 - 교육과정 설명회 -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학교 정보의 정확한 공시 다. 학부모 교통 봉사 조직 운영	지역민 학부모 학부모	수시 수시 1회 1회 1회	연중 연중 3월 3,10월 3월	행정실 학부모 교무 학부모,담임 학부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

교육중점	구현내용	대상	목표량	시기	담당
1.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가. 학년 특색을 살린 진로탐색주간	1-6	1회	6월	연구,담임
	- 학생표준화 검사 실시	5, 6	1회	6월	연구,담임
	- 지역 연계 진로 체험(자몽)학습 실시	6	1회		연구,담임
	나. 미래 직업 진로 특강	5-6	1회	6월	교무
2.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가. 교육복지 운영 내실화	1-6	수시	연중	복지
	- 학생 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				
	- 신속한 교육복지 대상 파악 및 지원				
	나. 교육환경 조성	1-6	수시	연중	복지
- 위기 학급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 수요자 중심 맞춤 지원	1-6	수시	연중	복지	
라. 학생 맞춤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특수	수시	연중	특수	
3.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가. 다양한 소통방식 활용	학부모	수시	연중	정보,담임
	- 학교 안심 알리미				
	- 학교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 활용				
	나. 각종 재난 대응 훈련 실시	1-6	수시	연중	안전,담임
	- 안전교육 강화(각 학년 51차시 이상)				
	- 소방 훈련 실시	1-6	연2회	5,11월	
	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1-6	수시	연중	행정실
	- 냉난방기 주기적 점검				
	- 모든 실 공기 청정기 설치				
	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1-6	수시	연중	영양
- 친환경 식재료 활용					
-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및 모니터링	학부모	수시	연중	영양	
- 영양 소식지 발간					
마. 학교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 실시	전교원	1회	1월	연구	
4.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및 예술교육	가.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1-6	수시	연중	방과후
	- 수요자 요구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				
	나. 학교 체육 활성화	1-6	수시	연중	체육,담임
	- 전담교사 배치				
	- 아침체육활동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 다양한 교실 놀이를 활용한 수업				
다. 예술 강사를 활용한 수업 전개	1,2	수시	연중	예술,담임	
- 1,2학년 무용 수업 실시					
라. 1인 1악기 교육(학년군별 동일 악기)	3-6	수시	연중	음악	
- 전담교사 및 전담강사 배치					

4 연간 학사 일정

2024학년도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금	삼일절	1	월	1	수	한마음체육대회	1	토	1	월
2	토		2	화	2	목		2	일	2	화
3	일		3	수	3	금		3	월	3	수
4	월	시업식/입학식	4	목	4	토		4	화	4	목
5	화		5	금	5	일	어린이날	5	수	5	금
6	수	교육활동보호주간	6	토	6	월	대체휴일	6	목	6	토
7	목		7	일	7	화		7	금	7	일
8	금		8	월	8	수	영아체험센터(5학년)	8	토	8	월
9	토		9	화	9	목	장애인식개선교육	9	일	9	화
10	일		10	수	10	금	영아체험센터(5학년)	10	월	10	수
11	월	민주시민 교육주간	11	목	11	토		11	화	11	목
12	화	1학기학급임원 선거	12	금	12	일		12	수	12	금
13	수	진단평가	13	토	13	월		13	목	13	토
14	목	전교어린이회 선거	14	일	14	화		14	금	14	일
15	금		15	월	15	수	과학의달 행사	15	토	15	월
16	토		16	화	16	목	부처님오신날	16	일	16	화
17	일		17	수	17	금	현장체험학습 (1학년)	17	월	17	수
18	월	친구사랑주간	18	목	18	토	합동소방훈련	18	화	18	목
19	화		19	금	19	일	합동소방훈련	19	수	19	금
20	수	교육과정설명회	20	토	20	월		20	목	20	토
21	목		21	일	21	화		21	금	21	일
22	금		22	월	22	수	신체발달상황검사 (2,3,5,6학년) 기후변화교육	22	토	22	월
23	토		23	화	23	목	합동소방훈련	23	일	23	화
24	일		24	수	24	금	합동소방훈련	24	월	24	수
25	월	교통안전주간 학부모상담주간	25	목	25	토		25	화	25	목
26	화		26	금	26	일		26	수	26	금
27	수		27	토	27	월		27	목	27	토
28	목		28	일	28	화	다문화이해교육	28	금	28	일
29	금		29	월	29	수		29	토	29	월
30	토		30	화	30	목		30	일	30	화
31	일				31	금				31	수

2024학년도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일		1 화		1 금	장애인식개선교육	1 일		1 수	새해 첫날	1 토	
2 월		2 수	정보통신윤리교육	2 토		2 월		2 목		2 일	
3 화		3 목	개천절	3 일		3 화		3 금		3 월	
4 수		4 금		4 월	방과후수업공개주간	4 수		4 토		4 화	
5 목		5 토		5 화		5 목		5 일		5 수	
6 금		6 일		6 수	자체소방훈련	6 금		6 월		6 목	
7 토		7 월	학부모상담주간	7 목		7 토		7 화		7 금	
8 일		8 화		8 금		8 일		8 수		8 토	
9 월		9 수	한글날	9 토		9 월		9 목		9 일	
10 화		10 목		10 일		10 화		10 금	2학기총괄평가 (4~6학년)	10 월	
11 수		11 금		11 월	스포츠클럽주간	11 수		11 토		11 화	
12 목		12 토		12 화		12 목		12 일		12 수	
13 금		13 일		13 수		13 금		13 월		13 목	
14 토		14 월	수학여행(6학년)	14 목		14 토		14 화		14 금	
15 일		15 화	수학여행(6학년) 현장체험학습 (1,3학년)	15 금		15 일		15 수		15 토	
16 월	추석연휴	16 수	현장체험학습 (2학년)	16 토		16 월		16 목		16 일	
17 화	추석	17 목		17 일		17 화		17 금	겨울방학식	17 월	
18 수	추석연휴	18 금		18 월		18 수		18 토		18 화	종업식/졸업식
19 목		19 토		19 화		19 목		19 일		19 수	
20 금		20 일		20 수		20 금		20 월		20 목	
21 토		21 월	독서 주간	21 목		21 토		21 화		21 금	
22 일		22 화		22 금		22 일		22 수		22 토	
23 월	개학식	23 수		23 토		23 월		23 목		23 일	
24 화		24 목	현장체험학습 (4,5학년)	24 일		24 화		24 금		24 월	
25 수		25 금		25 월		25 수	성탄절	25 토		25 화	
26 목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수	
27 금		27 일		27 수		27 금		27 월		27 목	
28 토		28 월	수업나눔주간	28 목		28 토		28 화	설연휴	28 금	
29 일		29 화		29 금		29 일		29 수	설		
30 월	친구사랑주간	30 수		30 토		30 월		30 목	설연휴		
		31 목				31 화		31 금	겨울개학식		

평가 결과 처리 안내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제11조(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할 때 전출 시점까지의 평가 결과를 전산 자료로 전입교에 송부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에 면제, 유예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학적 변동 일까지의 평가 결과 전산 자료를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취학·전입학등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등의 성적처리)

㉑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평가 시 결시생 및 부정 행위 처리 절차와 기준

제21조 (결시생, 학생선수,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㉓ 과목별 교과학습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평가기간 연장, 해당 학급의 평가실시 시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처리한다.

㉕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한다.

-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 선도처분 및 해당 평가 최하위점 부여

평가 결과 및 평가 이의 신청 안내

제13조(평가 결과처리 및 평가 관련 자료 보관)

①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절차별 시기는 학급, 교과목, 담당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이의 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 신청 기회 부여 → 이의 신청 접수 (평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 → 이의 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② 학생들의 확인·이의 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은 당해 학년도 말까지 보관한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록 자료는 NEIS 기록으로 갈음한다.

<이의 신청서 양식>

평가 결과 이의 신청서

대상	학년	반	성명
내용	교과/기타	영역	결과 또는 내용
상세사유			

군산신흥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평가 결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〇〇년〇〇월〇〇일

위 신청인 학생 ○ ○ ○ (인)
학부모 ○ ○ ○ (인)

군산신흥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사교·의례·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 선물·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반사례

-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이 선생님(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허용사례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민원신청) 또는 청렴포털 : www.clean.go.kr (신고하기)

▶ 우리학교에서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불법찬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4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춘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춘지수수 신고(☎ 063-239-3299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1 공교육정상화법

-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19. 3. 26. 일부개정

◆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졸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1 경조사별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일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본인	20일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7일전, 최소3일전) -> 결재(학교장 허가) ->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출석인정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신청서의 체험학습 계획에는 학습목적이 드러나게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출석 인정 기간	- 코로나19 인한 본교 교외체험학습의 허가기간(교외학습 포함)을 30일에서 15일로 하향(가정학습 사유 포함, 단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만 사용 가능) - 반일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시간 미만인 경우)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 누리집 신청서 양식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정 감염병 감염시 출석인정

<p>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고,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진료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등교 중지를 시킵니다.</p> <p>▶ 감염병 아동 등교중지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에서 발생 시 → 유선으로 연락 → 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 → 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를 학교에 제출) 2. 학교에서 발생시 → 감염병 의심 아동이 학교에 등교 시→보건교사 면담 후 의심 아동 하교시킴. → 감염병으로 의사 진단 후 학교로 유선 연락 → 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 → 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 제출)

4 결석계 작성 안내

- 학교 누리집에 제출 서류 등 자세히 안내됨.

천재지변에 의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와 위 2, 3, 4번의 이외의 결석 시(질병, 개인 사정) 결석 후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과정	결석 사유 발생 -> 결석계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담임확인 -> 학교장 확인 -> 출결처리

(※ 결석계 양식은 학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안내



1 교육활동 보호의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나.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26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5. 손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
6. 성범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 불법정보 유통: 핸드폰 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1) 학교교육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 2) 침해 학생 조치 내용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침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의결

- | | | |
|------------|--------|-------------------------------|
| ① 학교에서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④ 출석정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
| | |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미참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 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해주세요.

- 선생님과 연락은 근무 시간에 학교 전화로 해주세요. 사전에 면담 시간을 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적인 연락,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학교 밖 상담 요구 등을 피해주세요.
- SNS에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상처, 멍 자국 발견 ▶ 자주 놀라거나 많은 용돈을 요구 ▶ 부모의 돈을 훔치는 경우 ▶ 일기장, 메모에 폭력적, 자극적인 글, 그림 ▶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빌려줬다며 고가의 물건 소지 ▶ 씹씹이가 커짐. ▶ 부모에게 공격적인 성향 ▶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많음.

3. 학교폭력의 유형

- 가. 물리적 - 폭행, 상해, 성폭력
- 나. 재산적 - 공갈(빼앗기), 손괴(물건 파손, 은닉)
- 다. 정신적 - 협박(공포감), 따돌림(의도적으로 피하기, 접근 방해, 놀리기, 면박주기), 강요
- 라. 사이버 - 명예훼손(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따돌림(문자, 인터넷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폭력 정보 반복 전송

4. 학교폭력의 가정적 요인

자녀 대화 및 교육 참여기회 부족	➡	학교폭력 이상 징후 미발견
한 자녀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약화

5. 학교폭력 발생 시 올바른 부모의 반응과 행동

가. 피해학생 부모의 반응과 행동	나. 가해학생 부모의 반응과 행동
(1단계) 흥분을 가라앉힌다. → 자녀를 안심시킨다. (2단계) 피해상황을 확인한다. →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설득 ▶ 평상시 가족과의 관계, 대화법 등 문제 파악 해결 ▶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6.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

가.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학교]	
① 학교폭력 접수 ▶ 신고접수대장 기록 및 관련 학생 상태 확인 ▶ (중대 사안인 경우) 즉시 유선(서면)보고 ▶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② 분리/학교장 긴급조치 및 보고 ▶ 관련 학생(교사 포함) 분리(7일 이내) ▶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 의무 시행 ▶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 실시

(관할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① 사안 접수 보고서 내용 검토(분석) ② 전담 조사관 배정(학교 방문일정, 적합성, 인원 등 고려)	

↓ (전담 조사관 배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① 학교 방문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관련학생 면담(필요시 학부모 면담) ▶ (필요시) 목격학생 및 관련교원 면담	②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 전문가 등	③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④ 보고서 제출 ▶ (학교) 전담기구 ▶ (관할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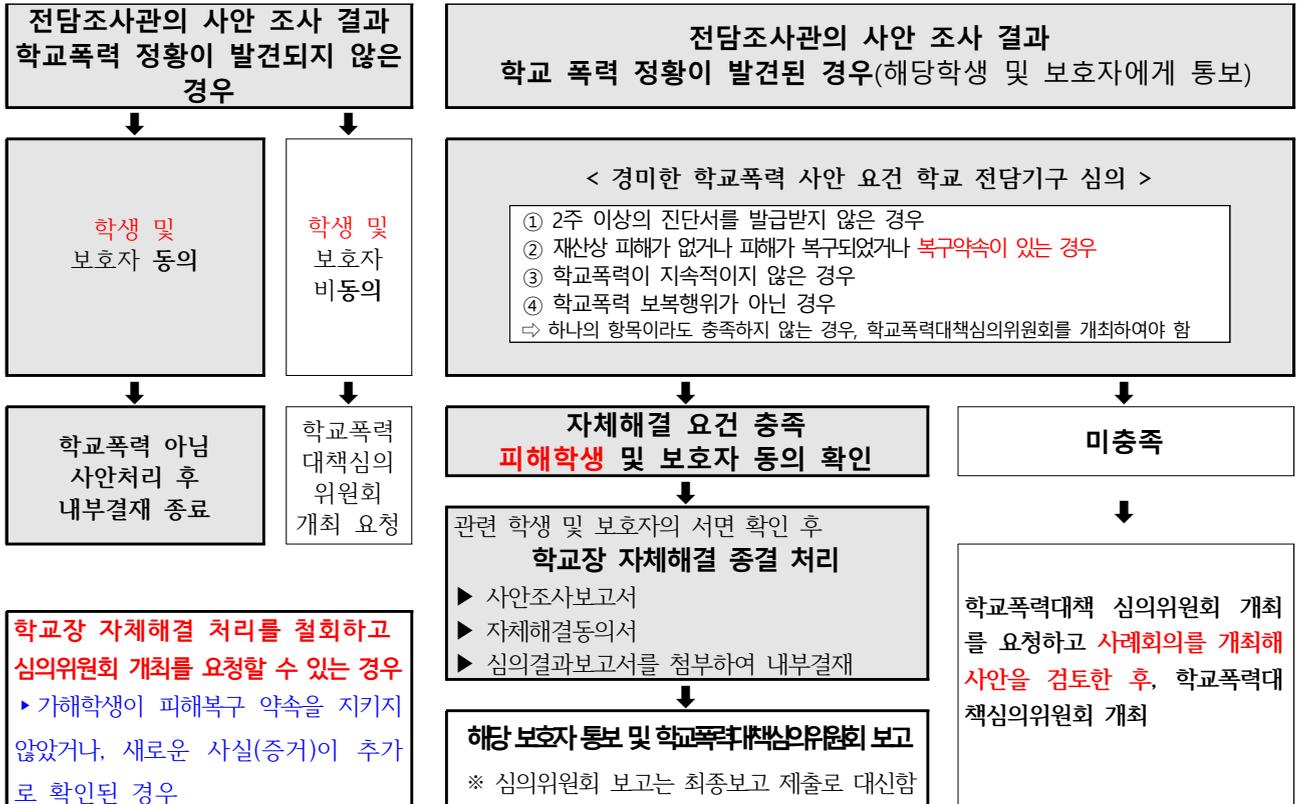
(전담 조사관이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

[학교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기구 심의』 과정은 아래의 '나'항 참고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학교]
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접수 ↓ ②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담당자 ▶ 사례회의 개최 ▶ 조사 결과 검토(체크리스트) - 사안조사 보완 필요성, 관계개선 가능성 검토 등 ▶ 사안 관련 자료 심의위원회 제출 →	③ 심의위원회 담당자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7일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 ▶ 파·가해학생 조치 결정 ▶ 피해(가해) 측에게 조치 결정 통보 ▶ 해당학교에 조치이행 요청 →
	조치 이행 및 미이행 명단 보고 ▶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 조치사항 이행 협조 ▶ 교육지원청에 이행 결과 보고 - 3개월 이내 미이행 학생 및 보호자 명단 교육지원청 보고

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기구 심의



다. 생활기록부 기재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
- 2)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3) 기재된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4)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2024.3.1. 이후 조치사항 중 6~8호는 4년후 삭제 가능, 9호는 삭제 불가)

7. 학교폭력 신고

☎ 117, 112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상담

⇒ 단순히 순간적인 기분에 의한 신고는 NO!

※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누리소통망(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앗는 사이버폭력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사한 사이버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개인정보를 갈취해 매매하는 사이버폭력 발생



- ▶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계정정보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불법광고를 본 일부 학생들이 친구, 후배 등의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빼앗아 불법 광고업자 등에게 매매하는 등의 사이버폭력 발생
- ▶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는 도박, 불법광고(스팸) 등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

□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필요

-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사례(SNS 계정, 전화번호 갈취 등)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 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은 대포 아이디(도용된 불법 아이디), 불법 광고 행위에 도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매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 ▶ 자녀가 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아이디 변경·정지·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사이버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자녀에게 사전에 알려줍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www.cyber.go.kr)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www.cyber1388.kr
 - 학교폭력에 대한 24시간 전화·문자와 카톡 상담 : 지역번호+1388, #1388
- ▶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117), 문자서비스(#0117)
- ▶ 푸른나무재단 :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 ▶ 스마트쉼센터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1599-0075)

아동 인권 존중 교육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 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인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자녀 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비난받으며 자란 자녀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자녀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받으며 자란 자녀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자녀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자녀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 인권 관련 사이트 안내 📦

인권이 침해되어 상담이 필요하거나, 인권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시간 되실 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둘러보시면 인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민원 신청 등 가능)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 인권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곳)
-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상담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곳)

도박 예방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접근성 증가 및 도박 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청소년 도박문제의 현황과 예방법을 공유 드리고자 하오니 가정 내 자녀 돌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돈내기 게임 처음 경험한 연령 “11.3”세



▶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은 도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내기 게임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로 나타나 이전에 성인에 문제로만 여겨지던 도박 문제가 이제 청소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 아이 도박 문제, 관심과 관찰이 답!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도박을 할 경우와 도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있을 경우, 도박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도박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PC방/오락실 및 본인 집, 놀이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 사용에 대한 **보호자(부모 및 교사)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도박 사각지대 예방하기

청소년 도박 SOS
전화상담 1336 | 채팅상담 네티라인

<p>S 예방</p> <p>Stop 멈추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방교육 ② SNS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p>O 조기개입</p> <p>Open 문제를 알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자정보제공 ② 온라인교육 ③ 고위험 프로그램 (학교/기관 의뢰) 	<p>S 치유</p> <p>Start 상담받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평가 ② 개인/집단상담 ③ 병원 치료 지원 ④ 재정·법률서비스 ⑤ 청소년 캠프 ⑥ 재발방지 및 추적관리
---	---	--

□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시청하기

		
--	--	--

청소년 도박 언젠가는 잡힙니다



아이들은 어쩌다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라!!
대학생에게 듣는 도박문제회복경험담



□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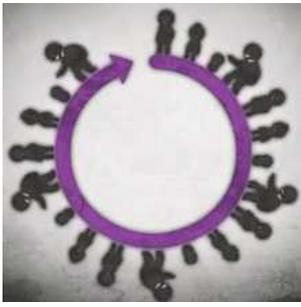
<p>전화 상담</p>  <p>헬프라인 1336 (국번없이 무요금)</p> <p><small>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small></p>	<p>온라인 상담</p>  <p>네티라인 (https://netline.kcgp.or.kr)</p> <p><small>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small></p>	<p>문자 제공</p>  <p>#1336</p> <p><small>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small></p>	<p>카카오톡 챗봇</p>  <p>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 친구추가</p> <p><small>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small></p>
---	--	--	---



1. 가정폭력예방교육

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
-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나. 가정폭력의 유형 및 피해자 징후

1)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언어,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감금 ▶ 신체 억압 ▶ 행동 자유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 폭언, 가족 비난 ▶ 심리적 괴롭힘 ▶ 외부 관계 단절 ▶ 일거수일투족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부부 강간 ▶ 강제 불임 및 낙태 ▶ 자녀에 대한 성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방임, 유기 ▶ 경제활동 통제 ▶ 지출 목록 감시 ▶ 양육비 미지원

“가정에서의
이런 상황,
폭력입니다”

-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 정신적 폭력 - 신체적 접촉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 성적 폭력 - 배우자 강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
-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기타 폭력 -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 강요,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기 등의 행위 포함)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징후: 불안, 공포, 우울감, 무기력함 등

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신고는
 ▶ 여성 긴급 전화 1366 ▶ 경찰 민원 포털 112

가정폭력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입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관심!' 가정폭력의 예방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2. 아동학대에방교육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p>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p> <p>징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로 보기에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계속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p>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p> <p>징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 (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p>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p> <p>징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굵은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p>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p> <p>징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가.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 / 억제 / 기타 가혹적인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보호자의 체벌금지”법 제정 (2015.3.27.)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제2항)			

다. 아동학대 원인

1) 부모요인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

2) 아동요인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발달이 늦어지는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 가정적·사회적 요인

가정적 · 사회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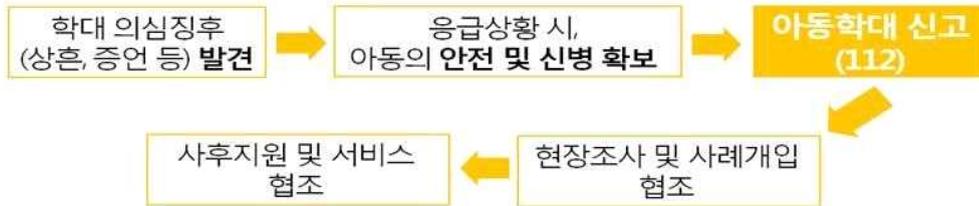
⇒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

라. 아동학대 신고

<p>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p>무엇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협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p>
<p>어떻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 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 129 /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마. 아동학대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신흥 교육복지 운영 계획



1. 운영목적

- 가. 교육 격차, 문화적 소외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 나. 학교의 특성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3. 운영대상 : 본교 교육 배려 학생(법정 저소득층 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4. 세부내용

영역	프로그램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기간
학생 파악	가정방문 개별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교육복지사의 면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학생 특성 및 환경 파악 ○드림스타트,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기관 이용 또는 사례관리 학생 정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5.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신입생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학급 활동을 통한 학생 특성 파악 ○양보, 배려, 규칙을 배우는 학교적응 놀이 활동 ○강난점검사를 통하여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학교 적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4. ○ 1학년 3개 학급
	재학생 강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행동검사를 통한 4학년 6학년 대상에게 강점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자아확립 및 학생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5. ~ 2024.6. ○ 4학년 3학급 ○ 6학년 4학급
맞춤형 지원	학교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관련된 지원 ○건강지원: 안경, 영양제, 충치치료 지원등 ○가정지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5.1. ○ 긴급지원대상 학생
	심리 치료 및 기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의뢰 및 군산 Wee 연계 ○개별상담 심리치료(놀이, 행동, 모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추천 및 일반학생은 지역사회연계 ○또래관계향상 집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D, 분노조절 어려움, 집중력 문제 지원 - 대인관계 개선, 감정조절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 또래관계 및 행복한 학교 생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대상: 상담 및 심리 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사제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제동행 멘토교사 모집후 운영 ○학교생활, 가정생활 고충상담, 인성지도, 문화 활동, 정서적 지원, 기초학습지원,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 집중 및 우선지원 학생 12명 내외(6팀)

	가족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양육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상담 개입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학부모 양육코칭 및 가족 상담 지원 ○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4. ~ 2024.12. ○ 가족상담이 필요한 학생
	인공지능코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과 기계와 협력적 소통을 통한 논리적,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4. ~ 2024.1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방학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기로운 여름방학 체험활동 ○ 성장하는 겨울방학 레고, 요리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 식품꾸러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7. ~ 2024.12. ○ 대상: 집중 및 우선 지원 학생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위한 칭찬 일기 ○ 자기관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 및 정리수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5. ~ 2024.1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자신감 향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기초학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부진 학생으로 한글 미해득 및 기초연산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 학습지도 ○ 진로·직업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취미, 특기를 탐색 및 직업에 기회 제공 - 잡월드 또는 키자니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5. ~ 2024.1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으로 군산시가족센터 연계
	자율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맞춤형 자율동아리 운영(3개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교육복지대상학생 프로그램수요 조사 반영(만화, 보드게임, 인공지능활동 등) - 창체 연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5. ~ 2024.1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마음봄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봄 봉사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교외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 신청학급 4개 학급
환경 조성	위기학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지원 대상 학급 및 어려움 발생 학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 신청학급 4개 학급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실 개방으로 보드게임, 상담 등 다양한 활동과 쉼터 공간 제공 ○ 교육복지 이벤트 등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 전교생
	내 몸의 가치, 깨끗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실과교과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연계 진행 ○ 직접 만든 세면용품을 사용하여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4.12. ○ 5학년 3개 학급
	누리빛 마을 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근의 학교들과 연합하여 공동사업 진행 ○ 지역사회기관과의 사업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5.2.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담임 추천 학생
운영 지원	교육복지실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실 구축 ○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 ~ 2025.2.



1.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적 측면이 주가 되며, 교육에 있어서 특수한 지원이나 방법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 인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이며 다양한 교육활동 중,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장난 또는 배려의 부족은 자기 방어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

-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가중처벌(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를 우선함.

3.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 ★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호칭이 아닙니다. 소중한 이름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도록 지도해주세요.
- ★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해 주되, 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것을 지도해주세요.
- ★ 나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놀리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해주세요.

4. 이것이 궁금합니다.(Q&A)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급에서만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A.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각 학급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 ⑥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⑪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우리 아이가 특수학급 학생과 같은 반이 되어서 걱정이예요.

- A. 통합교육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에게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증진 시키는 기회가 되며, 학생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특수교사의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아이에게 특수학급 학생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 A. 친구에게 꼭 필요한 도움만 주라고 가르쳐주십시오. 특수학급 학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통합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 학생을 우리 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수학급(사랑반)에 가야 할까요?

- A.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학습적인 측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을 파악하고 특수교육대상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학교에서 예비선별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한 세상!



양성평등은 여성, 남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2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성 중립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 “여자는 암전해야지!”, “남자가 왜 그래!” 등 성차별적인 언행 자녀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이런 언행들이 행동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 ➔ 진로, 학업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남성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의식” 때문에 발생하므로 (예: 남자 - 능동적, 여자 - 수동적, 남녀의 성욕은 다르다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가족을 위한 열 가지 약속 ♥

1.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2.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습니다.
3. 같이하는 취미활동을 만듭니다.
4. 집안일을 나누어 합니다.
5. 집안의 중요한 일은 함께 결정합니다.
6. 함께 지킬 규칙을 서로 상의하여 만듭니다.
7. 각자의 자기개발을 격려합니다.
8. 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9. 가족의 전통을 이해하고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1 성교육의 필요성

최근 부모 노릇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되는데, 걱정거리의 상당 부분은 자녀 교육과 관계되어 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 달리, 오늘날 정보 기술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그중에도 특히 성에 관한 교육은 부모님들이 받아보지도 못한 교육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더욱 당황스러워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 시기를 지나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바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가지는 성에 대한 태도나 교사의 성인식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과거와 달리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초등학교 3학년에 초경을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으며, 6학년 어린이가 임신하는 경우도 생겼다. 아이들이 몸만 성장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해졌다.

나. 성 정보가 넘쳐난다.

아이들에게 밀려오는 성적인 자극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커졌다.

다. 어린이 성폭행 등 생활 속의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야 한다는 각성이 높아졌다.

2 성교육을 하는 목적

성을 떼어놓고는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성을 잘 조화시키면 행복과 기쁨을 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죄의식과 불안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성 생리에 대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성도덕이나 양성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즉, 성교육은 성기(性器)교육이 아니라 남녀의 애정교육이며 인격교육이다.

결국 성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적 성장 발육을 돕고 그 성적 성숙이 사회의 윤리도덕에 부합될 만한 인격을 갖게 하며, 스스로를 자연적, 사회적, 실존적 존재로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돕는데 있다.

3 성교육의 시기

성교육의 시작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성교육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아이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식이나 태도에 관련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삶이 곧 성교육이 된다.

4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

- ➔ 미리 알려줍니다.(성교육 동화나 만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 ➔ 차이에 대해 알려줍니다.(사람마다 개인차)
- ➔ 남녀 간의 예의를 갖추게 합니다.
- ➔ 성폭행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 밝은 마음으로 몸을 사랑하게 합니다.

5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12가지 방식

- 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정확한 용어를 가르친다.
- 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 마.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 바.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도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인지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 사. 아이들에게 서로서로 그들의 느낌을 말하고 자신들을 위해 변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아.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자. 아이들에게 그들의 몸은 그들에게 속해 있으며 그들의 몸을 누가 만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 차. 나의 몸의 성적인 부분들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음을 가르친다.
- 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뒷받침하도록 돌보는 접촉을 한다.
- 타.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도록 노력한다.

6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친족 성폭력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 부모 자신이 건강한 성 의식을 갖도록 한다.
- 아이들과 평소 많은 대화를 한다.
- 누군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어린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하라고 말해준다.
-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말라고 일러 준다.
- 어디 갈 때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 꼭 알리도록 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일러준다.
- 공공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일러준다.
- 어린이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어린이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에게 “왜 그런 사람을 따라갔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가해자의 잘못이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어린이를 안심시킨다.
- 어린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외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즉시 경찰서나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한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 한다. 현장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의학적인 증거는 48 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당장은 법적 처리를 안 하더라도 증거물들은 사건 당시 보존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 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 여성 긴급전화(1366)
 - ➔ ONE-STOP지원센터(전북대학교 병원 내 063-278-0117)
 - ➔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군산성폭력상담소(063-445-1366)
- 어린이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을 삼간다.
- 아이에게 성교육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묻어두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성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잘못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공정성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 부모가 노력하여야 할 일

-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 아이 연령에 따른 성 지식이 있어야 한다.

7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속설

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한다?

- ☞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면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여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추궁하듯 캐묻거나 말을 막거나 단정적으로 미리 판단해 말한 뒤 “그렇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따로 있다?

- ☞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이며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 아동에게 성폭력을 하는 가해자는 정신병자다?

- ☞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웃의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는 오히려 아이를 유인해서 몰래 성폭력을 저지르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오남용(흡연) 예방 교육



본교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흡연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건강교육 일환으로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를 운영하오니 사랑하는 자녀와 학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학부모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흡연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가.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에 해롭습니다.
-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 다. 청소년 흡연은 키 성장뿐만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성장을 방해합니다.
- 라.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2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 가.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 나.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 흡연이라 합니다.
- 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라. 자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마. 가족들과 외식할 때 금연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 바. 자녀가 흡연하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포함)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금연 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불법 마약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항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적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약물(필로폰)을 사용하여 변한 얼굴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다.



1998



2002

필로폰 투약후

건강한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지로), 온라인송금
 예금주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좌번호 : 기업은행 327-001666-04-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www.drugfree.or.kr
 Tel. 02-2677-2245 Fax. 02-2677-2247 중독재활센터 02-2679-0437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뇌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 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코와 귀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입

흡연은 이를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심장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케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폐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간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신장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



피부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농양이 온다.



뼈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는 1899-0893입니다.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 39 -

자살과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다는 게 알고나 하는 말인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10~19세 소아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흔히 자살 문제는 사춘기 이후의 나이에서 보이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SNS상에 자해 인증사진을 돌려보기도 하고 모방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 표현의 신호**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됩니다.
- 나. 어린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자살의 개념보다는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다.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 라. 괴로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때, 자해 행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 마. 부모가 느끼는 당혹감을 직접 표현하거나 성급히 자녀를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2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자극되기도 합니다.

- 가. 자녀가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담임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물어보세요.
- 나.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 다. 학교 가기 싫다고 호소할 때 등교를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라.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헤아려보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화하십시오.

3 어떤 점을 관찰해야 할까요?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언어	<input type="checkbox"/>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함. <input type="checkbox"/> 자기비하적인 말을 함. <input type="checkbox"/>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함. <input type="checkbox"/>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
행동	<input type="checkbox"/>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input type="checkbox"/> 수면 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잠. 또는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일찍 깬.) <input type="checkbox"/> 식사상태의 변화(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 <input type="checkbox"/>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마침. <input type="checkbox"/>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술, 담배 등)
정서	<input type="checkbox"/> 감정상태의 변화(죄책감, 외로움, 무기력 또는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멍한 모습) <input type="checkbox"/> 대인기피, 흥미상실(평소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는 즐기지 않는 모습, 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 학교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사망 학생은 최소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부모님은 자녀가 위와 같은 신호를 보일 때 일시적인 스트레스 신호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1) 관찰되는 모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혹시 무슨 일 있니?”

2) 죽음에 관해서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데...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 있니?”
- “내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아빠)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자녀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듣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4) 집안의 위험한 물건(칼, 약물 등)을 없애거나 감춰주세요.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5)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X)
- “그건 나쁜 생각이야.”(X)
- “힘들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 별거 아니야.”(X)
- “그랬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구나.”(O)

6) 표현을 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엄마(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와면 좋을까?”
-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

7)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특히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이가 다시 자살 생각을 하는 경우, 혹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 표현이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소통과 연결감이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두고 귀 기울여 주세요.



◆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립니다.

◆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 보호기를 설정합니다.
-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합니다.
-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 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 신상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킵니다.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

- 1 (보행·이동 시) 스몸비족, 주변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 2 (운전 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그것은 불법입니다.
- 3 편한 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 4 내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 5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면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 6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 출처: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국민안전문화진흥원, 2017.12.)

- 7 가정에서는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세요.
- 8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일의 능률은 올라갑니다.
- 9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마트 에이징(Smart Aging)'을 실천하세요.
- 10 스마트폰 문자 대신 직접 대화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 11 가족, 친구와 식사 시간을 자주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합니다.
- 12 산책, 운동, 음악 감상 등 취미활동을 만들어보세요.
- 13 (공공장소 등) 도서관, 공연장, 지하철 등에서 '기본 매너'를 지켜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

- 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미세먼지 '보통'에도)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합니다.
- 나. 외출 후 깨끗이 씻고, 충분한 물과 야채, 과일 섭취하기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 제출하면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당 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단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3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예방교육 및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식생활관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청정기 각 교실에 설치 완료

□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농도별 예보등급(μg/m ³)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주의보	경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 ³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 ³ 이상 2시간 지속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 ³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 ³ 이상 2시간 지속
	PM2.5	0~15	16~35	36~75	76이상		
확인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확인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문자	



군산신흥초등학교

54136 전북 군산시 백토로 129번지

교장실 (063) 467-2274 교무실 (063) 467-2272

행정실 (063) 467-2271 FAX (063) 467-2275

<http://kshin.or.kr/>
